

적도기니 (Equatorial Guine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(당연적용) 자영자(적용제외)	근로자(당연적용) 자영자(임의적용)	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신설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4.5% / 적용제외 / 21.5%	4.5% / 26%(임의) / 21.5%	
연금수급 개시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0년	10년	-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80%	80%	-
최저연금액	-	(노령·장애) 117.304 CFA francs	최저연금제 신설
일시금	X	X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47년
- 현행법 : 1984년(사회보장, 1990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공공부문 근로자,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한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
- 적용제외 :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소득의 4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최저임금

- 법정최저임금 : 경제부문에 따라 월 129,035 CFA francs(건설) ~ 258,068 CFA francs(석유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기준은 없음

○ 자영자

- 월 신고소득의 26%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300,000 CFA francs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기준은 없음

○ 사용자

- 월 임금 지급총액의 21.5%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최저임금
 - 법정최저임금 : 경제부문에 따라 월 129,035 CFA francs(건설) ~ 258,068 CFA francs(석유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기준은 없음

○ 정부

- 연간 사회보장급여액의 25% 이상
-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※ 가입자, 자영자, 사용자 및 정부의 보험료는 현금질병 및 출산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, 가족 수당의 재원으로 활용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퇴직 전 10년 중 60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
- 법률 시행 시점에 50세에서 60세 사이인 공무원 및 군인의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은 120개월 이하임

○ 장애연금

- 모든 유형의 업무에 있어 완전히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일상 업무에 있어 완전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하며, 장애 발생 직전에 연속하여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
- 부분장애 : 일상 업무 수행 능력이 66% 이상 100% 미만 상실된 것으로 판정받은 자
- 상시간호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·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또는 6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경우 지급
- 수급가능 유족 : 30세 이상 미망인(장애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),

장애가 있는 부양, 14세 미만 자녀(학생은 18세 미만,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).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, 사망자와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 피부양 부모(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 또는 다른 피부양 친인척

- 배우자 재혼 시 유족연금 지급 정지
- 장제비 : 가입자 또는 노령·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최종 2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40%에 10년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년 당 월 평균소득의 2%를 가산한 금액 지급
- 최저연금액 : 117.304 CFA francs
- 최고연금액 : 최종 2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
- 급여조정 : 5년마다 조정

○ 장애연금

- 가입자가 모든 업무에 있어 근로능력이 완전 상실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가입자 월 소득의 40% 지급
- 가입자가 일상 업무에 있어 근로능력이 완전 상실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연금은 6개월 동안 지급
- 최저연금액 : 117.304 CFA francs
- 상시간호보조금 : 장애연금의 100% 지급
- 부분장애 : 가입자 월 소득의 40%를 최대 3개월 간 지급
- 가입자가 요구되는 의학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급여는 중지될 수 있음
- 급여조정 : 5년마다 조정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40% 지급. 월 평균소득은 통상 사망 전 2년 동안의 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함(특정 상황에서는 대체 기간이 사용될 수도 있음)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사망자 연금액의 80% 지급
 - 배우자가 자녀가 없고 30세 미만인 경우 연금은 최대 24개월 동안만 지급
- 고아연금 : 수급 가능 자녀 각각에게 연금 지급. 모든 고아연금 합산 총액은 사망자 월 소득의 20%(배우자 연금이 정지된 완전고아 또는 한부모고아에게는 40% 지급)
- 그 외 유족
 - 피부양부모에게 사망자 월 소득의 40% 지급. 사망자가 연금수급자인 경우 사망자 연금액의 80% 지급
 - 피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사망자 월 소득의 40%를 사망자 피부양 친척에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

- 급여조정 : 5년 마다 조정
- 장제비 :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고용되어 있었다면 사망자의 월 소득의 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,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수급하거나 수급할 수 있던 연금액의 2배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, Employment Promotion, and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- 사회보장청(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